

『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
-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수익발생시설에 대하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함

3. 주요내용

- 임시시장 개설 요건이 ‘등록’에서 ‘신고’로 완화
(안 제2조, 제15조, 제16조, 제18조)
- ‘시장활성화구역’이 ‘상권활성화구역’으로 변경
(안 제2조, 제11조, 제13조)
- ‘등록시장’과 ‘인정시장’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통시장의 정의가 변경(안 제3조, 제6조 ~ 제10조)
-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

지정취소 조항 삭제(안 제26조, 제33조)

- 수익금 사용 및 정산 규정 신설(안 제38조, 제39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,
같은 법 시행령,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 ,
「민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상인회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의 자율성과 활동을 보장하고 수익금 사용용도 및 정산 보고, 환수 등에 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